공백 없는 필수의료, 따뜻한 공공의료, 함께 하는 의료원

2025년도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JEONBUK STATE NAMWON MEDICAL CENTER

2025년도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 의료원 경영활동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여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평가하므로서 인권 친화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여 지속발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관련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권경영 이행 지침

제22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상정 한다. 다만, 재상정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원장 또는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부의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 및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위원회는 의료원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료원이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Ⅱ 추진개요

□ 평가개요

○ 평가분야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의료원 경영 활동 전반)

○ 평가기간 : 2025. 08. 01.~08. 31.(약 1개월)

○ 평가방법

- 지표별 현황보고(증빙자료) 기준 서면평가, 현장평가・인터뷰(필요시)
- 지표별 각 부서 담당자 1차 평가 후 인권경영위원회 2차 검증

○ 시행절차

절차	세부 평가계획 수립 및 체크리스트 점검	⇨	자체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	공개 및 평가환류 (방지책 시행)
담당	기획계		각 소관부서		기획계		기획계 및 해당부서
일정	2025.7월 중		2025.08.01.~ 2025.08.29.		2025.09.		2025.9월 중

Ⅲ 추진계획

□ 자체점검 시행

○ 점검기간 : 2025.08.01.(금)～08.14.(목)

○ 시행방법 : 각 이슈별 소관부서가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자체 평가(점검)

○ 평가분야

- 이슈별 소관부서 지표(7개 분야, 81개 지표)
  - ‣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산업안전보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소비자 인권 보호 등(붙임 참조)

□ 작성방식

○ 제출내용 : ① 기관운영분야 체크리스트
② 주요사업지표 체크리스트 ③ 증빙자료

○ 체크리스트 : 지표별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를 충족하는지 자체평가하여 답변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중 택 1]

○ 증빙자료

구분		제출내역
긍정답변	"예"	관련근거 제출(결재문서, 규정 등)
부정답변	"보완필요"	관련근거, 개선계획 제출
	"아니요"	개선계획 작성
기타답변	"정보없음" "해당없음"	제외사유 작성 (사유 미흡 시 긍정·부정 답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단 구성 : 인권경영 담당부서 및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평가기간 : 2025.08.18.(월)~08.29.(금) 기간 중 선택

○ 평가방법 :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이슈별 담당 위원이 서면 평가

- **(신뢰성 검토)** 소관부서의 답변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부합 여부 확인

※ 근거 부족 시 → 보완자료 요청, 답변유형(예/보완필요/아니오 등) 변경

- **(답변확정)** 자체점검 및 신뢰성 검토 결과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총괄평가)**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인권리스크 선정
- **(제언)** 종합, 주요 이슈 및 권고의견(방지조치) 제시

○ 평가점수 산출

- 인권영향평가 이슈별 응답 내용(긍정답변, 부정답변)을 점수화하여 이행수준을 산출[소수점 아래 반올림]
- 기타 답변(정보없음, 해당없음)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산출식

$$\text{평가점수} = 100 \times \frac{(\text{“예”답변} \times 1) + (\text{‘보완필요’답변} \times 0.5) + (\text{‘아니오’답변} \times 0)}{\text{기타 답변을 제외한 이슈별 지표수}}$$

Ⅳ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인권영향평가 세부계획 및 체크리스트 점검(2025년 7월 중)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2025년 9월중)

- 인권영향평가 결과 상정 및 심의·의결

○ 최종결과 공개 : 원장 최종보고 후 의료원 홈페이지 내 공개

○ 평가환류 : 취약요인 개선방안 수립·시행

- 취약요인 도출 : 자체평가, 인권경영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 ▸ 자체평가 부정적 응답(보완필요, 아니요) 지표
- 취약요인별 개선과제 도출 →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
  - ▸ 평가지표 설정을 통한 주기적 점검 실시

붙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평가이슈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소관부서	기획계

분야		지표	담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증빙자료 (관련근거/개선계획/제외사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인권존중 정책선언	1	의료원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한다.								
	2	인권정책 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인권영향 평가 정기적 실시	3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협력업체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	5	의료원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6	의료원은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또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7	의료원은 인권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8	협력업체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의료원 차원에서 대응한다.								
인권경영 성과	9	의료원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10	인권경영 개선 활동 성과를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11	보고는 의료원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12	인권경영 개선 활동에 대한 성과는 객관적이고 적정하다.								
	13	인권경영 개선 활동에 대한 성과는 인권경영위원회의 검증을 거친다.								
	14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구제절차 마련	15	의료원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16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17	피해자가 의료원 구제절차 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협력한다.								
	18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합 계				0	0	0	0	0		
평가위원 의견									평가위원 확인(서명)	

평가이슈	고용상의 비차별
소관부서	총무계

분야		지표	답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증빙자료 (관련근거/개선계획/제외사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고용상 비차별	19	의료원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관련 법령에 따른 가점부여 등 제외),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20	의료원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21	의료원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2	의료원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고용상 남녀 비차별	23	의료원은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24	의료원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25	의료원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26	의료원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7	의료원은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28	의료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29	비정규직을 이유로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30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31	의료원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32	의료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합 계				0	0	0	0	0		
평가위원 의견									평가위원 확인(서명)	

평가이슈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소관부서	총무계

분야		지표	답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증빙자료 (관련근거/개선계획/제외사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33	의료원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4	의료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근로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35	의료원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대표와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분 금지	36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37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38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39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40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41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42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3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44	근로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기관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45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합 계				0	0	0	0	0		
평가위원 의견									평가위원 확인(서명)	

평가이슈	강제노동 금지
소관부서	총무계, 경리계

분야		지표	답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증빙자료 (관련근거/개선계획/제외사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강제노동 금지	46	의료원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47	의료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48	의료원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 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49	근로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50	근로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 통지 이후에 의료원을 그만 둘 수 있다.								
협력회사에 대한 강제노동 예방	51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52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합 계				0	0	0	0	0		
평가위원 의견									평가위원 확인(서명)	

평가이슈	산업안전 보장
소관부서	총무계

분야		지표	답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증빙자료 (관련근거/개선계획/제외사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작업장 안전	53	의료원은 사업장의 시설이 항상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54	의료원은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55	사무실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정수기, 세면대, 의자,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56	의료원은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사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무실 환경을 측정·관리한다.								
임산부 및 장애인 보호	57	의료원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58	임신을 한 근로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9	장애인들이 의료원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60	의료원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61	의료원은 장애인 법적의무 고용율을 준수한다.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62	의료원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63	근로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주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64	의료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65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66	「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보상절차를 진행한다.								
합 계				0	0	0	0	0		
평가위원 의견									평가위원 확인(서명)	

평가이슈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소관부서	총무계, 경리계

분야		지표	담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증빙자료 (관련근거/개선계획/제외사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67	의료원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모니터링 실시	68	의료원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보안당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69	의료원은 보안당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70	의료원의 보안당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71	의료원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72	의료원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 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합 계				0	0	0	0	0		
평가위원 의견									평가위원 확인(서명)	

평가이슈	소비자 인권 보호
소관부서	기획계, 원무계

분야		지표	담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증빙자료 (관련근거/개선계획/제외사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73	고객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정책 및 서비스 정보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74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한다.								
제품결함 시 조치	75	의료원은 서비스 제공 시 과실로 인해 고객이 손실을 당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한다.								
소비자 사생활 보호	76	의료원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의료원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7	고객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78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79	고객 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80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81	기관은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합 계				0	0	0	0	0		
평가위원 의견									평가위원 확인(서명)	